

【조 약】

- 조약제2217호(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6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589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20
- 대통령령제25891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21

【총 리 령】

- 총리령제111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2
- 총리령제1109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34

【부 령】

- 기획재정부령제448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4
- 문화체육관광부령제18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8
- 산업통상자원부령제9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2
-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3
- 국토교통부령제158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44

【국무총리훈령】

- 국무총리훈령제636호(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9

【고 시】

-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3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51
-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4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51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4호(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53
- 외교부고시제2014-850호(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53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55호(유해간행물)..... 56

(이면 계속)

제12조의6제3항 중 “사람”을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경력만을 가진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그 교육경력에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포함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공모교장이 재직 중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임용될 경우에도 일반 교장의 보수 기준이 아니라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이 동 필

●대통령령 제2589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나.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 다.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라.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 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수입산이력축산물로 한다.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장식별번호
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의 구축 등에 드는 비용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신청 접수, 인증, 인증갱신,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6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
3. 제5조의 개정규정
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0 | 20 | 40 | 160 |
|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0 | 20 | 40 | 160 |
|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10 | 20 | 40 | 160 |
|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10 | 20 | 40 | 160 |
|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10 | 20 | 40 | 160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10 | 20 | 40 | 160 |

| | | | | | |
|--|-----------------|----|-----|-----|-----|
|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0 | 40 | 80 | 320 |
| 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폐지를 도축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 50 | 100 | 200 | 400 |
| 자.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폐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 10 | 20 | 40 | 160 |
| 차.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 10 | 20 | 40 | 160 |
| 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10 | 20 | 40 | 160 |
| 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최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 20 | 40 | 80 | 320 |
|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10 | 20 | 40 | 160 |
| 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 10 | 20 | 40 | 160 |
| 거.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 10 | 20 | 40 | 160 |
| 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 10 | 20 | 40 | 160 |
| 더.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 40 | 80 | 160 | 320 |
| 러.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 30 | 60 | 120 | 240 |
| 머.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 30 | 60 | 120 | 240 |

| | | | | | |
|---|------------------------|----|-----|-----|-----|
| <p>며.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 <p>법 제34조 제1항 제20호</p> | 50 | 100 | 200 | 400 |
| <p>서.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p> | <p>법 제34조 제1항 제21호</p> | 20 | 40 | 80 | 320 |

◇개정이유

소 및 쇠고기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이력관리제도를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공포, 2014.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및 포장처리 신고 의무자의 범위, 공개대상 이력정보의 종류, 이력관리제도 관련 위반사실의 공포 내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및 포장처리 신고 의무자의 범위(제4조)

- 1)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거래 및 포장처리 신고 의무자를 도축장과 연결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거나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종업원 5명 이상인 식육판매업자 등으로 정함.
- 2)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거래 및 포장처리 신고 의무자를 축산물수입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와 종업원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포장처리를 의뢰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으로 정함.

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 대상자(제5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자,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조리·판매에 따른 이력번호의 게시 등(제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판매할 때 영업장 및 제품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 7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학교급식 대상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으로 정하고, 공개대상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음식점 및 급식소 등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입 쇠고기 중 부산물을 제외한 지육·정육 등으로 정함.

라. 이력정보의 공개범위 설정(제8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공개 대상 이력정보를 농장식별번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도축장 명칭 등으로 정하여 소비자가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구입 시 그 사유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이력관리제도 관련 위반사실의 공표 기준 등 마련(제17조)

이력관리제도 관련 위반행위로 벌칙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및 영업소의 명칭 등을 국립농산물품질원 및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홈페이지 등에 12개월 동안 공표하도록 하는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총리령 제111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6일

국 무 총 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2)라)(5) 중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를 “관할 구역에서”로 하고, 같은 2) 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 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